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이사회 규정

내규번호: 규정-6
입안부서: 법무2팀
제 정 일: 1998. 04. 03
개 정 일: 2021. 07. 0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권한)

제2장 구성

- 제4조 (구성)
- 제5조 (의장)
- 제6조 (감사위원회의 보고)
- 제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3장 회의

- 제8조 (소집)
- 제9조 (소집권자)
- 제10조 (소집절차)

제11조 (의사의 진행)

- 제12조 (결의방법)
- 제13조 (부의사항)
- 제14조 (위임)
- 제15조 (의사록)
- 제16조 (사무국)

제4장 집행임원

- 제17조 (집행임원)
- 제18조 (경영회의)
- 제18조2 (이사회내 위원회)
- 제19조 (규정의 개정)

부칙

- 제1조 (시행일)

제·개정 이력

No.	구분 (제정/부분개정/전면개정)	제·개정 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1	제정	1998. 04. 03	- 신규제정
2	개정	1998. 08. 27	
3	개정	1999. 02. 25	
4	개정	2000. 04. 27	
5	개정	2004. 03. 16	
6	개정	2007. 02. 07	
7	개정	2010. 05. 06	
8	개정	2011. 03. 11	
9	개정	2012. 05. 11	
10	부분개정	2017. 08. 31	- [별표]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세부기준 개정
11	부분개정	2021. 03. 24	
12	부분개정	2021.07.01	- 사명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 제13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04.3.16 본항 개정)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순위집행임원인 이사(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비상무이사의 순으로, 동순위의 대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0.5.6 본항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은 정관 제19조의 주주총회 의장 유고시에 준용한다. (2007.2.7 본항 신설)

제6조 (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4.3.16 본조 개정)

제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초청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 (소집)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도 개최한다. (2010.5.6 본조 개정)

제9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 소집은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0.5.6 본조 개정)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서면, 구두 또는 전자문서도 통고하여야 한다. (2010.5.6 본항 개정)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득표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결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012.5.11 본항 개정)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1.3.24 본항 개정)
- ③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견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견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견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의 처리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2004.3.16 본목 신설)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2012.5.11 본목 개정)
-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 승인 (2012.5.11 본목 신설)

-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2010.5.6 본목 개정)
-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010.5.6 본목 개정)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에 따른 득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승인 (2011.3.11 본목 신설)
- 준법지원인 선임(2012.5.11 본목 신설)
- 준법동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2012.5.11 본목 신설)
- 자기주식의 소각 (2021.3.24 본목 신설)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2010.5.6 본목 삭제)
-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주식배당 (2004.3.16 본목 개정)
- 자본감소 (2004.3.16 본목 신설)
- 정관 변경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안
- 이사의 보수안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2010.5.6 본목 신설)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분할, 회사의 계속 (2010.5.6 본목 신설)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2010.5.6 본목 신설)
- 주식의 소각 (2010.5.6 본목 신설)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한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2010.5.6 본목 신설)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2010.5.6 본목 신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010.5.6 본목 신설)
-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2010.5.6 본목 신설)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2010.5.6 본목 신설)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010.5.6 본목 신설)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2010.5.6 본목 삭제)
- [별표] 기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2011.3.11 본목 개정)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련 사항

-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 최고집행임원의 선임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4.3.16 본조 개정)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1.3.11 본항 신설)

1.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3.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2012.5.11 본목 신설)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도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영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004.3.16 본조 개정)

제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찬성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4.3.16 본항 개정)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6조 (사무국)

이사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동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집행임원

제17조 (집행임원)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 (경영회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집행임원들도 구성된 경영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004.3.16 본조 개정)

제18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도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 정하는 사항
-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및 본 규정에 따른다. 단,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도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2004.3.16 본조 신설)

제19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011.3.11 본조 신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3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27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27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7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세부기준

구분	상정기준
▪ 출자, 투자 및 그 처분 ▪ 자산의 취득 및 처분¹⁾ ▪ 자금의 차입²⁾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건당 4백억원 초과 ▪ 건당 5백억원 초과 ▪ 건당 1천억원 초과 ▪ 건당 4백억원 초과

1)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매각 등은 제외

2) Credit Line 설정 제외